

1. 개정이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세부 이행절차 등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 승강기를 공동설계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며,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단체가 공동설계한 설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

나. 타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5조)

-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인가 등의 사항이 관련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① 법 제18조제6호의2에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
2.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서 해당 단체에 소속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승강기 내용이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
라 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으려는 단체는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영 제
20조제1호에 따라 설계심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의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기준 확인) ①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u> <u>2.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u> <u>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서 해당 단체에 소속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승강기 내용이 법 제18조제6호의2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으려는 단체는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u> <u>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에 대하</u>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 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 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 고시한다. 1. (생략) 2. <u>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 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u> 3. (생략) ② ~ ③ (생략)	<u>여 영 제20조제1호에 따라 설계 심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기 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u>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협회</u>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